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 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(안 제5조제3항)

-「지방공무원법」제51조 (친절, 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제51조, 도 표준안 자치행정과-11829(2008. 9.11)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친절・공정)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・공정하고, 신속・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·공정하고,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(생 략) <신 설>	**제5조 (친절·공정)** ①-----공과 사를, ----------, ----------친절하고---------- ②(현행과 같음)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